

[일련번호 : 4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소홀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□□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□□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비공무원 공개채용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 제9조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직무 특성상 전문인력 또는 지역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, 국가유공자·장애인·저소득층·북한이탈주민·다문화가족·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고, 제한경쟁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22조(채용점검)에 따라 ① 채용방침 수립 시 감사팀장 협조와 면접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 ② 감사담당관에 채용점검의뢰를 필하여야 한다.

같은 규정 제13조(채용공고)에 따라 채용공고에는 각 전형 단계별 평가기준(배점비율, 평정표 등), 동점자 처리기준,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제15조(심사위원의 제척·회피 등)에 따라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은 스스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회피신청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) 및 별표2에 따라 채용분야의 채용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법정가점(취업지원대상자)을 적용하여야 하고, 제2항에 따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 처리해야 하고, 이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.

또한, 제23조(채용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의거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및 해임요구 대상이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인 해당 대상자인지 사전 확인을 위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과는 202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\*\*\*\* 및 \*\*\*\*\*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가점을 부여(4명 이상 채용 시)하고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, 조례 상 필수 공고사항을 누락하였고, 제한경쟁(지역인력)방식으로 채용함에 있어 채용점검 의뢰 누락 등 채용 관련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.

또한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요구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서식에 가족관계, 재산보유액 등 채용 목적과 무관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부적정한 서식을 사용하였다.

[표] 당직전담 및 직원후생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내역

구분	부적정 사항
제13조(채용공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기준(배점비율, 평정표 등) 누락</li> <li>-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부적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동점자는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양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li>-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누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채용서류 반환에 대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나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</li> </ul> </li> </ul>
제15조 (심사위원의 제척·회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사위원 보안 관련 서약서 미징구</li> </ul>
제16조(원서접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관계, 재산보유액 등 채용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포함된 부적정한 서식 사용</li> </ul>

구분	부적정 사항
제20조(가점 등)	- 취업지원대상자 등 법정가점 미적용 [2024년 **** 기간제근로자 채용(6명 채용) : 채용예정인원 4명 이상인 경우 법정가점(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)부여하여야 하나 미적용]
제22조(채용점검)	- 채용방침 수립 시 감사팀장 협조 및 채용점검의뢰 누락
제23조(채용결격사유)	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미징구

#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# 5. 조치할 사항

□□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향후 채용 시 조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서식을 개선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